

## 日本の 餘裕教室 活用對策

- 여유크실은 꿈의 공간 -

### Application Measures of a Surplus Classroom in Japan

李 演 生\*

Lee, Youn-Saeng

일본은 1982년에 1700만 명을 넘었던 공립 초·중학교의 학생수가 2001년에는 1100만 명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급 수도 49만 학급에서 38만 학급으로 10만 학급이 상 감소하고 있다. 학급 수는 감소하여도 교실 수는 줄지 않았으므로 대강 계산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10만 교실정도 예상되고 있어 이의 활용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추진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 1. 여유크실의 유효활용을 위한 문부과학성의 계획

공립 초·중등학교의 여유크실 활용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1993년4월에 「여유크실 활용지침」을 만들어 먼저 특별교실이나 다목적 교실 등 학교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하고, 나아가 학교 개방을 지원하는 공간, 지역주민의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 등への 전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하여 오고있다.

그 활동 예로서, 교사를 건축할 때에 상정하지 않았던 PTA실, 봉사활동 등을 위한 예비실, 다목적활동 홀 등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시설이라던가, 방재를 위한 비축창고 등이 있고 근래에는 보

육원 등의 아동복지시설, 노인서비스 센터 등 사회 복지시설 등으로의 전용도 시행되어져 오고 있다.



学校が、ずっと素敵な場所になる。  
~学校施設と社会福祉施設等との複合化・余裕教室の活用~



문부성의 홍보팸플렛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복합화·여유크실의 활용

문부과학성은 1997년에 재산처분수속의 대폭적인 간소화를 도모하여, 사회교육시설에 한하지 않

\* 정회원, 일본 큐슈대학 박사과정(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하여서도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함과 더불어 각종의 수첩·팸플렛 등을 작성하여 여유교실의 적극적인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유교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책을 매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중점추진사항』

(1) 여유교실활용지침의 책정 (1993년 4월 9일자 교육조성국장, 문교시설부장, 생애학습국장 공동 통지)

- ①검토체제의 정비
- ②학교별기본계획의 책정(학교시설로의 활용, 학교이외의 시설로의 전용)

(2) 재산 처분수속의 간소화·명확화

여유교실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 등에 따라 여유교실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 학교시설 이외의 시설로의 전용할 경우의 재산처분수속 등을 간소화·명확화

①수속의 간소화(문부과학대신의 승인→보고)

- 1991년도(사회교육시설,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보육시설, 아동관)
- 1995년도 (노인서비스센터, 비축창고)
- 1998년도

[폐교] (보육원, 아동보호시설, 특별보호양로원, 신체장애자서비스센터, 신체장애자보호시설, 정신박약자갱송시설, 공해방지시설, 방재시설, 의료시설, 시험연구시설, 연수시설, 청사)

[여유교실] (보육원, 신체장애자서비스센터)

②납부금 취급의 명확화

1997년11월20일자 통지에서, 원칙적으로, 10년을 경과한 학교시설의 공용시설로의 무상전용은 납부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명문화

(3) 학교시설의 유효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①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구 후생성)의 공동으로 여유교실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의 전용에 관한 팸플렛을 작성하여 전국의 교육위원회 및 복지담당부국에 배포·주지(1998년 3월)

②여유교실을 학교시설에 활용을 도모한 사례를 소개한 팸플렛을 작성하여, 전국의 교육위원회 및 초·중등학교에 배포·주지(1999년 1월)

③1997년 7월부터 「학교시설의 유효활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일본건축학회에 위탁하여 실시.

학교시설이외에의 전용실태를 조사, 전용에 관계하는 유의사항 및 전용사례를 정리, 발간(1999년 2월)

④ 「여유교실활용을 위한 Q&A」를 작성하여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배포·주지(1999년 9월)

⑤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하여 여유교실의 보육원으로의 전용사례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2001년 2월)



여유교실의 일일서비스센터에의 전용

2. 「여유교실」과 「일시적 여유교실」

1993년 4월에 책정된 여유교실활용지침에 있어서 「여유교실」이란 「장래 항구적으로 여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보통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 여유교실」이란 「현재는 교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장래학급의 증가, 학년당의 학급수의 변동 그 외의 이유에 의해 당면 특정 용도목적의 스페이스로 개조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고 있는 보통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1. 여유교실 수 및 활용계획

학교 구분	보유 교실수①	여유 교실수②	발생율 ②/①	여유교실의 향후 활용계획 (단위 :실)		
				특별교실 등에 활용	학교시설 이외에 전용	기타
소학교	292,009	(100) 5,807	2.0 %	(67.3) 3,911	(5.2) 300	(27.5) 1,596
중학교	131,167	(100) 2,851	2.2 %	(70.4) 2,007	(1.3) 37	(28.3) 807
계	423,176	8,658	2.10 %	(68.3) 5,918	(3.9) 337	(27.8) 2,403

\*2000년5월1일 현재, ( )내는 여유교실 수에 접하는 비율(단위 : %)

여유교실에 관하여는 종전의 빈 교실, 전용 가능한 교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 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유교실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되

어있지 않은 이유도 있다.

여유교실활용지침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 여유교실의 개념을 항구적으로 전용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학급증설 등의 장래 대응 스페이스로서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학교시설행정상의 과제는, 주로 전자의 항구적으로 전용하는 여유교실의 대응과, 활용지침 작성 후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항구적으로 전용되어야 하는 것을 「여유교실」 부르는 것으로 하였다.

또, 「여유교실」은 학교 외 시설에 전용한 경우는 물론, 특별교실 등 학교내의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시설의 개조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는 「여유교실」은 없어진다. 「일시적 여유교실」에 관하여도 유보하고 있는 기간은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 이러한 「여유교실」 「일시적 여유교실」의 구분방법이 약간 다를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보통교실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여유교실」에 관하여는 지역에 있어서 활용요망의 적절한 파악에 진력하여, 서둘러 그 활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3. 여유교실의 전국적 규모

여유교실에 관하여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특별교실 및 다목적 교실 등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교실로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이외, 근간에는 각 지역의 요망사항을 근거로 생애학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의 전용도 증가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2의 1999년 5월2일부터 2000년 5월1일까지의 1년간의 여유교실의 활용상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동학생·교직원을 위한 스페이스 및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스페이스 등에 전용된 사례가 약 3만 교실이 증가하여 이러한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약 4만2천 교실의 여유교실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함께 하여 종합적인 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교실, 선택학습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실의 설치 및 교육상담실 등의 설치에 수반하는 많은 여유교실의 활용이 도모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외, 학교시설이외에 전용된 사례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여, 방과후 아동클럽실, 보육원 등의 아동복지시설이라던가 지역 방재비축시설 등을

표 2. 여유교실의 활용상황(1999년5월2일-2000년5월1일)

(단위:실)

학교 구분	활용 교실수		학교시설에 활용						학교시설이외에 전용									
	활용 학교수	활용 보통 교실수	아동학 생공간	교직원 공간	지역학 교개방 공간	학교방 재용 비축 창고	철거	계	기타 학교	사회교 육시설 등	지역방 재용비 축창고	아동 복지 시설	방과후 아동클럽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기타	폐교	합
소학교	7,319	(100) 29,240	(86.2) 25,218	(8.3) 2,429	(1.3) 368	(1.5) 434	(0.4) 123	(97.7) 28,572	(0.0) 7	(0.1) 39	(0.3) 80	(0.2) 52	(1.2) 355	(0.1) 31	(0.0) 2	(0.2) 41	(0.2) 61	(2.3) 668
중학교	3,606	(100) 13,501	(84.0) 11,339	(12.3) 1,662	(1.1) 142	(1.7) 226	(0.4) 63	(99.5) 13,432	(-) 0	(0.0) 3	(0.3) 34	(0.0) 7	(0.0) 6	(0.1) 8	(-) 0	(0.1) 8	(0.0) 3	(0.5) 69
합계	10,925	(100) 42,741	(85.5) 36,557	(9.6) 4,091	(1.2) 510	(1.6) 660	(0.4) 186	(98.3) 42,004	(0.0) 7	(0.1) 42	(0.3) 114	(0.1) 59	(0.8) 361	(0.1) 39	(0.0) 2	(0.1) 49	(0.2) 64	(1.7) 737
1999 조사합계	4,855	(100) 13,227	(85.0) 11,241	(7.3) 967	(0.8) 108	(1.4) 188	(1.6) 209	(96.1) 12,713	(0.2) 30	(0.7) 89	(0.2) 28	(0.5) 70	(0.8) 112	(0.2) 23	(0.0) 1	(0.2) 22	(1.1) 139	(3.9) 514

※ 「학교시설에 활용」 중 「아동학생을 위한 공간」의 내용

구분	학습방법·지도 방법의 다양화에 대응한공간	특별교실등의 학습공간	아동·학생의교류·지원의 공간	마음의 교실 카운세팅실	수업준비 공간	계
소 학교	8,356	9,427	5,156	562	1,717	25,218
중 학교	2,519	4,228	2,504	1,031	1,057	11,339
합 계	10,875	13,655	7,660	1,593	2,774	36,557

중심으로 737교실의 전용이 도모되어지고 있다.

여유교실 등의 해소에 관하여는, 각 학교의 설립자인 시정촌(市町村)이 각 지역의 실정에 응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한다던가 생애학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학교이외의 시설에 활용하는 것을 적절히 판단하여, 시정촌 전체의 활용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4. 여유평실의 활용을 도모할 경우 유의사항

여유평실이 발생한 경우는 여유평실은 「시설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받아들여 이제까지 학교에 있어서 시설의 제약 등에 보다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던 교육활동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꿈의 공간」으로서 활용하여 갈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특히, 근년에 교육내용·교육방법의 다양화, 탄력화가 진행되어 종래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업의 형태가 생기기도 하고 보호자 및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학교가 강하게 요청되는 등, 학교시설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어 각 학교에 있어서 그러한 대응을 위해 여유평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200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서는 각 학교에 있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창의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형태랑 지도방법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1년부터 종래의 학습편성과 다른 학습집단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소인수 지도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제 7차 교직원정수의 개선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유평실을 활용한 이야기교실의 공간

이를 위하여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소인수 지도 등의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통교

실, 특별교실에 연계되는 교실로서 「신세대형 학습공간」을 정비할 필요가 대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동칸막이 등에 의해 자유로이 구획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IT를 활용한 수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내LAN 및 정보관련설비를 구비한 교실로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건물에 관하여는 대규모 개조사업 등을 통해 여유평실 등을 개조하여 대응하는 고려가 요망된다.

이와 같이 여유평실은 먼저,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을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생의 학습, 생활활동 공간 및 학교개방을 위한 공간 등에의 활용을 검토하여, 그 위에서 여유평실 전체의 규모나 배치장소의 관계로부터 해당학교로서의 활용이 도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 외의 시설에 적극적으로 전용을 도모하는 것을 검토하여 갈 필요가 있다.

어찌하였든, 모처럼 많은 금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정비한 시설임으로, 유효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없도록 여유평실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유평실의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도모한다.

#### 5. 여유평실의 활용검토위원회

반드시 검토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학교에 있어서 활용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학교에 있어서 적절히 검토를 행하여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상관없다. 무엇보다도 여유평실이 발생한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응하여 당해 여유평실의 활용을 신속히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등에 검토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유평실의 활용에 일정의 방침이 정하여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방침에 의해 활용이 도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해 학교 시설이외의 활용에 관하여는 근년에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유치원, 양호학교의 분교실(分教室) 등 기타학교 등의 시설의 전용이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의 전용은 물론이며 보육원, 아동관 등의 어린이 발육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이나 노인 일일서비스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의 전용도 지역의 요망 등을 근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유교실의 활용에 있어서는 1993년4월에 통정한 「여유교실의 활용지침」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6. 여유교실의 개조시 국가로부터의 지원

여유교실을 신세대형 학습공간 혹은 특별교실 등의 학교시설로 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부과학성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 대규모 개조사업 (교육내용·방법의 변화 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개조공사)

##### ① 보조대상사업

여유교실을 특별교실이나 다목적교실 등의 전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2,000만엔 이상(2억 엔을 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형 학습공간으로의 전용에 관하여는, 사업비1,000만엔 이상, 화장실 개수에 관하여는, 사업비 400만엔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보조대상공사

- a. 교육내용·방법의 다양화 등에 일치시키기 위한 내부개조공사
- b. 여유교실을 활용한 특별교실이나 다목적공간 등의 전용하기 위한 내부개조공사
- c. 여유교실 등을 개조하여 「신세대형학습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내부 개조공간
- d. 화장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 a.b.c 와 일치 또는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개수를 행하는 화장실 개조공사

##### ③ 보조율 1/3

재정력지수1.00을 넘는 지방공공단체에 관하여는 2/7



다양한 학습에 활용되는 컴퓨터학습공간

#### ○ 목재를 이용한 연수교류시설정비사업

##### ① 보조대상사업

여유교실을, 내장 등에 목재를 활용하여 화실(和室), 마음의 교실(心の教室-카운셀링실 등), 독서공간 등에의 개조사업에 대한 보조로서 사업비가 학교별로 600만원 이상(마음의 교실에 대하여는 400만엔 이상 단, 각 설치자가 마음의 교실을 2실 이상 정비하는 경우는 추가 1교당 200만엔 이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여 1,800만 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 ② 보조대상공사

- 기설 건물의 방 배치를 변경하는 개수공사(특히, 마음의 교실 및 독서공간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정비에 수반할 필요가 있는 방의 배치를 바꾸는 등의 신구방의 철거)
- 내장·건구(建具) 등의 개수공사
- 급·배수설비 등 부대설비의 개수공사
- 「마음의 교실 상담원」 등이 배치된 마음의 교실의 공조공사

##### ③ 보조율 1/3

재정력지수1.00넘는 都道府縣 및 정령지정시가 배치하는 것에 관하여는 1/3×1/재정력지수

### 7. 학교이외의 시설로의 전용에 유의할 점

근년 들어 여유교실을 평생학습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학교교육이외의 시설로의 전용을 도모하는 요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중앙교육심의회답신 「앞으로의 지방교육행정의 본연의 모습에 관하여(1998년9월21일)」에 있어서 학교가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학습, 교류활동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등 지역에 열린 학교 만들기를 시설추진으로부터 추진하여 가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여유교실은 먼저,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의 충실(학교개방을 포함)을 위하여 활용하여야만 하나, 당해 학교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의 실정에 응하여 학교이외의 시설로의 전용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여야만 한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국고보조를 받아 정비한 학교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학교교육이외의 시설로의 전용을 도모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수속(재산처분수속)을 1997년11

표 3. 전용시설의 개수에 대한 보조

사업명	소속관청	대상전용시설 등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시설정비사업 및 사회복지시설등설비정비비국고부담(보조)급	<b>후생노동성</b> 사회·원호국 ·복지기반과(사회복지)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과(장애복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의 규정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한 시설정비 및 시설정비비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보조)
여유교실을 활용한 개축정비의추진	노건국 ·계획과(노인복지)	다음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는 시설 (1) 1의 교부대상시설 (2) 재산처분통지「보고사항일람」의 2-(2)에 기재하는 시설	공립학교의 여유교실에 있어 노인테이서비스센터등에의 전용을 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시설정비비 및 시설정비비에 관한 보조
어린이 성장지원을 위한 거점 정비사업	고용노동부·아동가정국 ·보육과	어린이 성장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	어린이 육성가정에 대한 상담, 어린이성장썬클의 육성, 어린이와 타세대간의 교류등을 행하는 공간확보를 위한 시설정비비 및 시설정비비에 관한 보조
신산촌진흥을 위한 거점 정비사업	<b>농림수산성</b> 농촌진흥국 ·지역진흥과 중산간지역진흥실	산촌·도시교류추진을 위한 자연체험학습, 농림체험학습 등의 거점이 되는 체재형 활동시설	지역의 실정에 응하여 폐교를 활용하고 산촌 등 지역과 도시 어린이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조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체험학습, 고령자의 사는 보람 발휘를 위한 농업 체험 학습 등의 거점이 되는 체재형 활동시설의 정비 등에 요하는 보조
자연체험형환경학습거점(고향자연기숙사)	<b>환경성</b> 자연환경국 ·총무과 자연체험추진실	자연체험하우스	폐교, 폐 가옥을 활용하고 옥내활동, 강의, 사무 등을 행하는 장소로서 정비를 요하는 보조
유희시설재활용추진모델사업	<b>총무성</b> 자치행정국 ·지역진흥과 過疎대책실	폐교(폐가옥)를 숙박시설, 체험·교류시설에 재활용·정비	소외지역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폐 교사, 가옥 등 유희시설을 유효활용하기 위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비에 대한 보조
정보배리아 프리·텔레워크센터시설정비사업	<b>총무성</b>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이용촉진과	정보배리아프리·텔레워크센터	고령자·장애자를 향한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설치한 정보배리아프리·텔레워크센터시설을 정비하는 경유의 보조
지역재이용학교관련시설 정비사업-2001년도 신규	<b>임야청</b> 임정부 ·목재과	지역에 열린 학교만들기에 이바지하는 학교시설(여유교실의 활용)	여유교실을 지역에 열린 학교만들기에 이바지하는 학교시설에 전용할 때 지역재료를 활용하여 내장을 목재화하는 경비에 대한 보조

월20일에 개정하여, 승인에 대신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하는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는 등 간소화·명확화를 도모하여, 그것에 관한 팜플렛도 작성하여 배포했다.

더욱이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에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여유교실을 보육원 등으로 전용한 사례집을 게재하고 있어 많은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또한, 여유교실을 학교교육이외의 시설에 전용



하는 경우의 기본적 사고방식, 계획, 설계 및 관리운영상의 유의점, 학교와 전용시설의 상호교류 등에 관하여 정리한 지침서 「여유교실의 전용 - 학교교육이외의 시설에의 전용」(1999년 2월)을 작성했다.

특히 전용 후는, 복합시설이 되는 관계상 복합시설의 메리트를 살려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

표 4. 전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보조

사업명	소관관청	대상전용 시설등	사업내용
방과후 아동건강 육성사업	후생노동성 고용노동 · 아동가정국 · 육성환경과	방과후 아동클럽	보호자가 노동등에 의한 주간가정에 없는 소학교 저학년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

표 5. 전용시설의 대한 지방채

사업명	대상전용 시설 등	사업내용
커뮤니티시설 -여유교실활용형 -정비사업	집회시설, 문화활동공간, 레크리에이션룸, 아동유희시설 등	지역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으로서의 기능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는 학교 시설의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생의 감소에 수반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유교실을 지역의 커뮤니티시설에 전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

○ 재정조치

지역종합정비사업채 75% (교부세: 다음연도 30~55%)	일반채원 25%
--	-------------

또한, 여유교실을 학교교육이외의 시설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문부과학성의 국고보조금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여유교실을 평생학습 등 시설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채(地方債)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시설에 있어 타 부처의 국고 보조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여유교실활용의 지침 등을 참고하도록 되어있다.

8. 폐교된 학교시설의 활용 검토방안

여유교실의 활용에 관하여는 아동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폐교는 인구 과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의 실정에 응하여 유효한 사후이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의 활용계획은 학교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기관이 지역전체의 공공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한 주민의 요망·의견도 들어가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시설로서 정비되어진 것이므로 아이들에 관계된 시설 및 평생학습관계의 시설로의 전용이 먼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의 7절에서 소개한 보조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하다.

또한 계간지인 「교육과 시설 1999년 여름」(문교시설협의회발행)호에 있어서, 근년에 폐교가 된 학교를 전용하여 문화자료관, 노인보건시설, 숙박연수생애학습센터, 자연교육숙박시설 등의 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9. 여유교실의 활용에 참고가 되는 자료

여유교실의 활용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도도부현(都道府縣)교육위원회 등이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다양한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市町村)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나고야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개방의 이상적인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으로서 「트와이라이트스쿨」라는 정비사업을 발족시켜 방과후 학급, 평생학습·평생스포츠 등에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이중에 여유교실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아동의 놀이공간확보, 다른 학년과의 교류 및 어린이 성장지원을 하기 위해 「적성에 맞는 어린이 체험학교」 사업을 위하여 여유교실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토시에서는 「학교커뮤니티프라자사업」이라 하여 시내의 기존 2개 중학교교를 1개의 평생학습 존으로 하여 주로 여유교실을 활용하고 특징 있는 개방시설로서 정비하는 한편 「학교체험싸롱사업」이라 하여 학교의 여유교실 등의 1교실을 개수 정비하여 학구 내에 사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친근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시정촌에서 여러 가지 활용이 도모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침서

1. 여유교실의 활용, 여유교실활용지침의 해설, 활용예, 정비지침 등, 문교시설협회 발행, 1993년 11월
2. 여유교실의 전용, 학교교육이외의 시설에의 전용예 등, 제일법규출판 발행, 1999년 2월

○ 팸플릿

3. 여유교실에의 전용, 사회복지시설 등에의 전용 예, 문부성 후생성 1998년3월
4. 여유교실은 꿈의 공간, 새로운 학습공간 및 지역과의 교류 공간 전용 예 (위의 자료는 문부과학성홈페이지를 참고) 문부성, 1998년1월

- 최근의 잡지 등에의 특집기사(활용예의 소개 등)
5. 스쿨아메니티, 커뮤니티 거점으로 출발하는 여유교실의 활용, 보익쿠스 발행 1999년3월
6. 교육과 시설, 여유교실의 활용·전용, 문교시설협회의 발행 1999년6월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보육원 등에의 전용사례 등 2001년2월